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

제정 2011. 8. 5 훈령 제568호 일부개정 2014. 12. 24 훈령 제627호(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15. 12. 28 훈령 제644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 회의실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2. 28>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 12. 28>
 - 1. "회의실"이란 상황실, 회의실, 강당, 홍보홀, 1층 중앙 현관홀을 말한다.
 - 2. "관리부서"라 회의실의 관리 주무부서를 말한다.
 - 3. "관련부서"란 행사계획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회의실의 사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, 별도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.
- **제4조(관리부서)** ① 회의실의 시설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2. 28>
 - 1.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 본청: 회계과
 - 2. 구청: 행정지원과

[제목개정 2015, 12, 28]

- 3. 보건소 · 사업소 · 동: 소속기관의 장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 회의실의 사용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, 12, 24, 2015, 12, 28>
- 1. 강당. 회의실. 홍보홀: 총무과
- 2. 상황실: 정책기획과
- 3. 1층 중앙 현관홀: 회계과
- 4. 회의실의 음향설비: 정보통신과
- 제5조(사용범위) ① 회의실의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시의 공공단체,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

- 의 장(이하 "관리부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8>
- 1.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
- 2. 시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
- 3. 그 밖에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8>
- 1.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2.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「공직선거법」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- 4. 정치활동, 특정 종교단체의 내부 종교행사를 위한 경우
- 5.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하는 경우
- 제6조(사용절차)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계획 수립시에 관리부 서장의 협조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민간단체 등에서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실 사용신청서를 행사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제5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일 10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협조를 의뢰하여야한다.
 - ③ 회의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관리부서장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실 대관사용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8>
 - ④ 관리부서장이 장소사용을 승인한 이후에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8>
 - ⑤ 회의실 사용신청은 행사성격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되, 신청 우선 순위에 따른다.
- 제7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회의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8>
 - 1. 회의실은 사용 후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정리정돈하고 집기는 원상태로 배열한다.
 - 2. 사용 중 시설이나 물품을 더럽히고 손상하거나,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

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- 3.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과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· 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4. 회의실의 사용이 끝나면 집기 및 기자재 정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 즉시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관리자의 사용 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8>
- 제8조(사용취소·중지) ① 사용예정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8>
 - 1. 관계법령, 조례 등의 규정 또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
 - 2.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
 - 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의실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- 4.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9조(사용대장 비치)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실 사용 승인 대장을 비치·관리한다. 다만,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사용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2. 24 훈령 제627호,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 - ⑦ 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제2호 중 "기획예산과"를 "정책기획과"로 한다.
 - ⑧ 부터 ⑩ 까지 생략

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

부칙 <2015. 12. 28 훈령 제644호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8>

사 용 신 청 서

사용시설	
	① 20 년 월 일(요일) / ② 20 년 월 일(요일)
사용(일시)기간	① 시간 : ~ : (시간) / ② 시간 : ~ : (시간)
	※ 사용기간은 준비시간부터 마무리 청소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.
사용(가능)시간	
사용(목적)내용	※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
사용(참석)인원	명
사용(기본)설비 (사용장비 표시)	○ 기본조명, 냉방, 난방, 유선마이크(), 무선마이크(), 연대, 사회대, 프로젝터, 스크린, CD, 피아노 ○ 기타:
비 고	

「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」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회의실 사용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안 양 시 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8>

회의실 대관사용 확약서

■ 준수사항

- 회의실의 대관시간(행사시작과 종료)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집기를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.
- 회의실에 반출·입되는 물품사용, 기기 장치작업(전기, 기계설비, 방송장비 사용 등)은 반드시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,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시 원상 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.
- 행사 관련 현수막, 부착물 등은 사용 후 즉시 철거하고 ,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회수처리 하여야 합니다.(안양시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사용)
- 시청사는 금연구역입니다. 시청사 내에서는 흡연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, 참가자 및 관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 여야 합니다.

■ 제한사항

- 정치, 종교, 상업성이 있는 행사는 대관사용을 제한합니다.
- 행사 중 물품판매 등 현금수수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.
- 회의실에는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합니다.
- 행사와 관련된 홍보안내문에 시 명칭 등 게재를 금합니다.

안양시청 회의실 대관사용 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용신청자 단체명: 성 명: (인) 주 소: 역락처:

안 양 시 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회의실 사용 승인 대장

લ્યું મો	구분	접	접 수 일 자	부서명 (신청자)	사용 승인 내역					비고	
선빈		일			,	목	적	기간		참석인원	